

대통령령 제 호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4호아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,
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

별표 8 제2호에 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투. 법 제5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68조 제1항제11호	500	700	1,00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한다.	제37조(권한의 위임) 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(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)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가. ~ 사. (생 략)	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아.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</u> <u>른 신고의 수리</u>
<u>아. ~ 컸. (생 략)</u>	<u>자. ~ 터. (현행 아목부터 컸</u> <u>목까지와 같음)</u>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